



제426회 국회 (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적용 대상으로 명시 등〉
■ 박지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10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문위원 조문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으로 명시	3
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의 공개	10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박지원의원 등 15인
2. 발의연월일 : 2025. 4. 22.
3. 회부연월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개대상자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을 하게 하는 주식백지신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국내 주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해외주식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그런데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해외기업들이 국내에 입찰을 하거나 국내민사·형사·행정소송 등 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로 공직자의 해외주식보유량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따라서 해외주식에 대하여도 직무관련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결과는 청구인에게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에는 모두 공개되고 있지 않아 주식백지신탁제도

가 자칫 자의적·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시킴으로써 주식백지신탁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사항 및 심사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정하되, 위원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여 공직자 재산공개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제14조의5제12항).

Ⅲ. 검토의견

1. 해외주식을 주식백지신탁 대상으로 명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4제1항).

현행	개정안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공개대상자등”이라 한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되, 제4조제1항제3호의 사람 중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모두가 <u>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또는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유예사유가 소멸된 날 현재 주식의 총</u>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① ----- ----- ----- ----- ----- ----- ----- ----- ----- <u>보유한 주식(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 ----- ----- -----

나. 검토의견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개대상자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법률 규정상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주식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국외에서 발행된 외국법인의 주식(이하 “해외주식”)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¹⁾ 이에 근거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

1)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①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른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판단할 때에는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관련 업종에 관한 정책 또는 법령의 입안·집행 등에 관련되는 직무
2. 각종 수사·조사·감사 및 검사에 관련되는 직무
3. 인가·허가·면허 및 특허 등에 관련되는 직무
4. 조세의 조사·부과 및 징수에 관련되는 직무
5. 법령상 지도·감독에 관련되는 직무
6. 예산의 편성·심의·집행 또는 공사와 물품의 계약에 관련되는 직무
7. 법령상 사건의 심리 또는 심판 등에 관련되는 직무
8. 그 밖에 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직무

② 심사위원회는 일정한 유형이나 종목의 주식을 정하여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할 수 있다.

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을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 중 한 유형으로 고시함에 따라²⁾ 현재 동 고시에 해당하는 해외주식은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개정안은 국내시장 상장 여부 등에 상관없이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모두 주식백지신탁 대상으로 명시하려는 것으로, 이들 외국기업 역시 국내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령이나 정책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공개대상자들에 공기업의 장, 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각 근거 법령에 따라 국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는 바, 공개대상자들의 직무 수행이 외국기업의 경영상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봄.

다만,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공직자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거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그 밖에 직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고시한 주식의 유형 또는 종목으로는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회사(뮤추얼펀드) 주식, ②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부동산투자회사 주식, ③ 「선박투자회사법」상의 선박투자회사 주식, ④ 「해외자원개발사업법」상의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주식, ⑤ 「문화산업진흥기본법」상의 문화산업전문회사 주식, ⑥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제1항의 본인 및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 중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KOSPI) 및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보유 주식 중 동일한 회사가 발생한 주식의 합산 가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합산 수량이 해당 회사 발생주식 총수의 1만분의 1 미만인 소액주식이 있음.

현행 제도상 직무관련성 여부는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공개대상 자등이 본인이나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종사하거나 그 직무를 지휘·감독하는지 고려하여 개별 주식 종목별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 바,

해외주식(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의 주식. 이하 같음)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경우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개별 주식 종목별로 해당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직무관련성 심사를 하여 매각 또는 백지신탁 대상 주식을 판단하여야 함.

그런데, 외국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그 주식이 상장되지 아니한 외국기업이 발행한 주식이라는 해외주식의 특성상 이들 주식을 주식백지신탁의 대상으로 하더라도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심사대상자의 해당 주식에 관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영향력 행사 가능성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자료의 입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해외주식의 경우에도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관한 상당한 정보를 입수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국내주식에 상응하는 정도의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근거가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개연성에만 근거하여 직무관련성 심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는 법 제14조의5제8항에 따라 주식 관련 정보접근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해외주식의 경우 개별 주식에 대해 공직자가 주가에 변동을 가져오는 등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 현재 주식백지신탁 대상에서 해외주식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8에 따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주식으로 결정·고시함에 따른 것으로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해외주식을 포함하는 것은 고시 개정사항이라는 점,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³⁾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

3)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

이 있으나 해외 기업에 대해서는 적용이 곤란하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5조(거짓 자료 제출 등의 죄) 공직자윤리위원회(제8조제11항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산등록사항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관의 장 등을 포함한다. 이하 제26조에서 같다) 또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부터 제8조제4항 및 제5항(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4조의5제10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각 기관·단체·업체의 장이 거짓 보고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의 공개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5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⑪ (생략) <u><신설></u>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u>⑫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제7항에 따른 직무 관련성 심사 결과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 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에 대하여는 주식백지신탁 위원 회의 결정으로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u>
<u>⑫ ~ ⑭</u> (생략)	<u>⑬ ~ ⑮</u> (현행 제12항부터 제14 항까지와 같음)

나. 검토의견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는 공개대상자 등(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와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에 대해 심사하는 제도임.⁴⁾

4)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5(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 등) ① 공개대상자등 및 그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직무관련성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인사혁신처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3명은 국회가, 3명은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자를 각각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3. 금융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4.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해당 직무를 수행한다.

⑥ 공개대상자등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제14조의4제1항에 따른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또는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게 된 날(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등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등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한다)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⑦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써 심사기간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⑧ 주식의 직무관련성은 주식 관련 정보에 관한 직접적·간접적인 접근 가능성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개대상자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서면질의를 할 수 있다.

공개대상자들은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주식 매각의무 또는 주식백지신탁 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 전보 등의 사유로 직위가 변경되어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⁵⁾부터 2개월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을 거쳐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보유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결과는 청구인과 등록기관의 장에게 통지되며, 동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여야 하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음.

⑩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주식의 직무관련성 유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단체 및 업체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단체 및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⑪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자들이 제6항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제14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거나 제9항에 따른 요구 또는 질의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해당 공개대상자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⑫ 누구든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직무관련성 심사청구·결정에 관련된 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⑬ 제1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는 제10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로, “제3항에 따른 허가”는 “제12항에 따른 허가”로, “등록의무자”는 “공개대상자등”으로 본다.

⑭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공개대상자들이 된 날, 제6조의3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들의 직위가 변경된 날 현재 주식의 총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공개대상자들이 된 날, 신고유예 사유가 소멸된 날 또는 공개대상자들의 직위가 변경된 날을 말함.

현재 법 제20조의2⁶⁾에 따른 연차보고서를 통해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결과에 관한 통계 자료가 공개되고 있으나,⁷⁾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나 심사 결과의 내용은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있음.

개정안은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심사 결과의 내용 등 그 운영에 관한 실체적 사항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자의적이고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인식하에 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심사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⁸⁾ 주식의 직무관련성 심사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마련된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에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봄.

다만,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의 공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등록재산의 공개 제도, 주식거래 신고내용의 비공개 원칙 등 현행 법률 규정과의 관계에서 상충될 소지가 있는

6) 「공직자윤리법」

제20조의2(국회 등에 대한 보고)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또는 해당 지방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에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차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해당연도에 이루어진 심사청구의 건수, 심사결과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건수, 직무관련성 불인정 건수, 각하 및 철회 건수 등 통계 수치를 제시하고 있음.

8)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와 심사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공개의 방식이나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취지로 이해됨.

것으로 보이는 바, 개정안 심사 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우선,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법 제10조에 따른 재산 공개대상자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닌 이들 공무원 본인 및 이해관계자의 주식보유 현황이 공개될 수 있음.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공개대상자의 주식거래 신고내용을 공개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바,⁹⁾ 이는 재산 공개대상자로 하여금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주식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되 주식 거래의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는 법 제6조의2제3항¹⁰⁾과 충돌할 소지가 있음.

아울러, 개정안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

9)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는 원칙적으로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 모두가 보유한 주식의 총 가액이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을 초과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식 거래를 통해 보유 주식의 총가액이 변동함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질 수 있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 있어 그 심사 청구 사항과 심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대상자의 주식 거래의 내역이 사실상 공개되는 효과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10)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① 제10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등록의무자는 제6조 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재산 변동사항 신고 시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주식 및 가상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에 관한 거래 내용을 등록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내역 신고 시 신고대상 거래의 범위, 신고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는 사항이라는 비공개 가능 사유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서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의 청구나 심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을 감안한 것으로 이해되나 그 요건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확성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될 여지가 있고, 그 밖의 비공개 가능 사유를 대통령령에 사실상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을 저해할 소지도 있는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 공개의 공익적 기대효과와 등록재산의 공개 제도 등 현행 법률 규정과의 체계정합성,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에 따라 우려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공개 제도의 도입 여부,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시기 등 방법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봄.

인사혁신처는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행법상 재산 내역과 관련하여 재산 공개대상자의 최초·정기 재산 현황만을 공개하고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이나 심사 결과와 관련해서는 주식 거래내역 신고 내용의 비공개, 심사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및 비밀엄수 규정 등에 따라 공개하고 있지

않으며,¹¹⁾ 특히 법 제6조의2에서 주식 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과 상충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주식의 매각 및 백지신탁 계약 체결 사실을 공개하도록 하여 이해충돌 방지 의무의 이행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 점,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사항 및 결과가 공개될 경우 공직자 및 그 가족의 사생활 침해 및 심사 결과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여 위원회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 재산공개대상자 외에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결과 및 주식 보유현황 등이 공개되는 점, 연차보고서를 통해 매년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및 결과에 관한 통계가 공개되고 있는 점, 공개대상자의 범죄수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및 결정 관련 자료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11)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와 신고사항의 심사 및 관리에 관하여는 제6조의2제3항, 제7조, 제8조, 제8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3을 준용한다.

제6조의2(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의 신고) ③ 제1항에 따른 거래의 신고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3조(재산등록사항의 목적 외 이용금지 등) 등록의무자는 허위등록이나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등록된 사항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처분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재산등록사항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재산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직무상 재산등록사항을 알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 의 처
02)6788-5342